



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
심의백서

제1장 위원회 구성

제2장 심의·의결 절차

1

위원회 구성

1. 활동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선거 기사(사실, 논평, 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였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헌법재판소의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대통령 궐위 선거로 치러졌으며,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한 2025년 6월 3일에 선거가 실시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라 탄핵 결정 10일 후인 2025년 4월 14일부터 선거일 30일 후인 2025년 7월 3일까지 81일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 역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기간

구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 2. 25. ~ 2000. 5. 13.	2000. 4. 13.	2000. 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관련 조항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 ~ 2002. 7. 13.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1. ~ 2003. 1. 18.	2002. 12. 19.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 ~ 200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1. 31. ~ 2006. 6. 30.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1. ~ 2008. 1. 18.	2007. 12.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12. 11. ~ 2008. 5. 9.	2008. 4. 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2. 1. ~ 2010. 7. 2.	2010. 6. 2.	2009. 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설치·운영기간 변경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5. 29. ~ 2010. 8. 27.	2010. 7. 28.	2010. 1.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재·보궐선거시에도 선심위 설치·운영
2010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8. 28. ~ 2010. 11. 26.	2010. 10. 27.	

구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고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1. 2. 26. ~ 2011. 5. 27.	2011. 4. 27.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1. 8. 27. ~ 2011. 11. 25.	2011. 10. 26.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1. 12. 12. ~ 2012. 5. 11.	2012. 4. 11.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2. 2. 11. ~ 2012. 5. 11.	2012. 4. 11.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2. 4. 22. ~ 2013. 1. 18.	2012. 12. 19.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2. 10. 20. ~ 2013. 1. 18.	2012. 12. 19.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3. 2. 23. ~ 2013. 5. 24.	2013. 4. 24.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3. 8. 31. ~ 2013. 11. 29.	2013. 10. 3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4. 2. 3. ~ 2014. 7. 4.	2014. 6. 4.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4. 5. 31. ~ 2014. 8. 29.	2014. 7. 30.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4. 8. 30. ~ 2014. 11. 28.	2014. 10. 29.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5. 2. 28. ~ 2015. 5. 29.	2015. 4. 29.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5. 8. 29. ~ 2015. 11. 27.	2015. 10. 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5. 12. 14. ~ 2016. 5. 13.	2016. 4. 13.	
2016년 재·보궐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6. 2. 13. ~ 2016. 5. 13.	2016. 4. 13.	2015. 8.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대선이 없는 해에는 재·보궐선거 1회로 축소
2017년 재·보궐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7. 2. 11. ~ 2017. 5. 12.	2017. 4. 12.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7. 3. 20. ~ 2017. 6. 8.	2017. 5. 9.	2017. 3. 10. 현재 탄핵결정에 따라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8. 2. 12. ~ 2018. 7. 13.	2018. 6. 13.	
2018년 재·보궐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8. 4. 14. ~ 2018. 7. 13.	2018. 6. 13.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9. 2. 2. ~ 2019. 5. 3.	2019. 4. 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19. 12. 16. ~ 2020. 5. 15.	2020. 4. 15.	
2020년 재·보궐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2020. 2. 15. ~ 2020. 5. 15.	2020. 4. 15.	

구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고
2021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1. 2. 6. ~ 2021. 5. 7.	2021. 4. 7.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1. 7. 11. ~ 2022. 4. 8.	2022. 3. 9.	
2022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2. 1. 8. ~ 2022. 4. 8.	2022. 3. 9.	
	2022. 5. 9. ~ 2022. 7. 1.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2. 1. 31. ~ 2022. 7. 1.	2022. 6. 1.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3. 2. 4. ~ 2023. 5. 5.	2023. 4. 5.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3. 8. 12. ~ 2023. 11. 10.	2023. 10. 1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3. 12. 11. ~ 2024. 5. 10.	2024. 4. 10.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4. 2. 10. ~ 2024. 5. 10.	2024. 4. 10.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4. 8. 17. ~ 2024. 11. 15.	2024. 10. 16.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5. 2. 1. ~ 2025. 5. 2.	2025. 4. 2.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25. 4. 14. ~ 2025. 7. 3.	2025. 6. 3.	2025. 4. 4. 현재 탄핵결정에 따라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

2. 구성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언론학회(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협회(언론인단체)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기간(2025. 2. 1. ~ 5. 2.) 중 출범하였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기위촉된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심의위원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심의위원을 겸직하였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이력	추천단체
위원장	박홍래	(현) 변호사,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박혁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자료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준형	(전)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전무	더불어민주당
	한기천	(현)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국민의힘
	박영흠	(현)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김민호	(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성기철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경영전략실장	한국신문협회
	정화옥	(현)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혜진	(현)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앞줄 왼쪽부터) 성기철 심의위원, 박혁진 부위원장, 박홍래 심의위원장, 정화옥 심의위원, 김민호 심의위원
 (뒷줄 왼쪽부터) 임종우 심의실장, 박영흠 심의위원, 김준형 심의위원, 정혜진 심의위원, 한기천 심의위원, 손정배 전 심의실장, 남승균 선거기사심의팀장

3. 기 능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한 후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선거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조치는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조치 관련 규정

제재조치	관련법률	관련규칙
정정보도문 게재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반론보도문 게재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8조의4	
경고결정문 게재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	

2

심의·의결 절차

1. 자체심의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 담당부서인 선거기사심의팀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이하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를 자체 모니터링하여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보도를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이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한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기사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결정 사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시정요구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6항, 제8조의3 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간 동안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해당 기사, 시정요구인의 신청취지 및 언론사 측 의견진술을 토대로 이를 지체 없이 심의한다. 시정요구인의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한편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를 결정한다. 결정 이후의 절차는 자체심의와 동일하다.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4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정당 혹은 후보자)이나 언론사는 이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각각 통보한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심의 절차와 동일하다.

● 심의절차

